

[별표 4]

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(제12조 관련)

구분	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	
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	취업지원 종료 후 취·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	2년
	취업지원 종료 후 취·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	1년 6개월
	취업지원 종료 후 취·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	1년
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	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지원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, 그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정함	